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새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1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이새날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용호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신복자, 유만희, 이성배,
이종환, 임춘대, 채수지,
최민규, 홍국표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함(안 제17조제2항).
- 나. “전대”를 “사용 · 수익”으로 변경함(안 제20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영 제13조제3항제20호”를 “영 제13조제3항제24호”로 한다.
제20조제3항 단서 중 “전대할”을 “사용 · 수익하게 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7조(사용허가)제2항의 중 “영 제13조제3항제20호”를 “영 제13조제3항제24호”로 하고, 제20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제3항 단서 중 “전대할”을 “사용·수익하게 할”로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